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어울림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운영하며, 실물 유니트가 없음에 따라
청약 신청자는 홈페이지(www.bdkhapt.co.kr)를 통한 공급주택형별 3D VR 및 평면도를 확인 후 인터넷으로 청약하여야 하며,
실물 유니트를 보지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분양사무실 운영안내
-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사이버 모델하우스(www.bdkhapt.co.kr) 운영과 분양사무실 방문상담으로 운영(2024.02.29.(목) 개관)할 예정입니다.
  ※ 분양사무실 방문 인원은 동반 1인으로 제한되며, 청약일 이후에는 당첨자 및 계약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www.bdkhapt.co.kr)를 통해 사전 예약하여 분양사무실 방문가능 기간(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계약체결 기간 등) 동안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청약일 이후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분양사무실 방문이 불가한 점 양지 바랍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www.bdkhapt.co.kr)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분양상담 전화 (☎ 1551-1356)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 ·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건축공사(선시공)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입니다.**
-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만 공급합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형으로만 공급)**
  이 점 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아파트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확장공사 계약을 별도로 계약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금액 외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일 정	2024.03.11.(월)	2024.03.12.(화)	2024.03.13.(수)	2024.03.19.(화)	2024.03.20.(수) ~2024.03.24.(일)	2024.04.22.(월) ~2024.04.24.(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17:30)			개별조회 (청약 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현장접수	-
장 소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 현장 접수장소 :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분양사무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 2층 110호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동가능하며 변동 시 별도 안내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비고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공공분양주택 주관업체 안내

▣ 시행위탁자 : 성남시 ▣ 시행수탁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 시공 및 분양 : 금호건설㈜

알려드립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2024.01.25.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2.29.(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000066입니다.

■ 본 아파트 견본주택은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운영되며, 입주자모집공고는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홈페이지(www.bdkhapt.co.kr)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dc.co.kr)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02.28.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기준 특별공급+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일반공급 중복 접수 시 중복청약에 의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 또한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 전체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의 당첨만 유효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이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며, 「주택법」 제57조의2에 의거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으로 거주의무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거주의무	최초입주가능일	5년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

※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Ⅰ 공급 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 규모

■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등 7필지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지하3~지상21층, 4개동 전용면적 85㎡이하 242세대 (특별공급 168세대, 일반공급 74세대)

2.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택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계)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약면적(계)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계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일반공급	최하층 배정 세대수	입주예정시기
2024000066		합계									242	24	48	48	12	12	24	74	10	'25.07
	01	074.9892	74	74.9892	22.0817	97.0709	13.4325	46.8631	157.3665	46.9237	71	7	14	14	4	4	6	22	3	
	02	084.9746A	84A	84.9746	22.3671	107.3417	15.2214	53.1033	175.6664	53.1719	71	7	14	14	4	4	6	22	3	
	03	084.9922B	84B	84.9922	22.7398	107.7320	15.2245	53.1143	176.0708	53.1830	30	3	6	6	2	2	3	8	2	
	04	084.9779C	84C	84.9779	23.4958	108.4737	15.2219	53.1053	176.8009	53.1740	70	7	14	14	2	2	9	22	2	

※ 입주예정 시기는 2025년 07월로 예정 되어있으나,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공급금액 (분양대금)

[단위 : 원, 세대]

주택형	타입	동(라인)	층별	세대수	주택가격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10%) 계약 시	1차 중도금(30%) 2024.09.25.	2차 중도금(30%) 2025.02.25.	잔금(30%) 입주지정일
074.9892	74	101동(4호) 102동(3호) 103동(3호) 104동(4호)	1층	3	357,142,465	277,457,535	634,600,000	63,460,000	190,380,000	190,380,000	190,380,000
			2층	4	357,142,465	291,457,535	648,600,000	64,860,000	194,580,000	194,580,000	194,580,000
			3층	4	357,142,465	304,857,535	662,000,000	66,200,000	198,600,000	198,600,000	198,600,000
			4층	4	357,142,465	318,957,535	676,100,000	67,610,000	202,830,000	202,830,000	202,830,000
			5층 이상	56	357,142,465	332,357,535	689,500,000	68,950,000	206,850,000	206,850,000	206,850,000
084.9746A	84A	101동(2호) 102동(1호) 103동(1호) 104동(2호)	1층	3	404,698,338	311,001,662	715,700,000	71,570,000	214,710,000	214,710,000	214,710,000
			2층	4	404,698,338	326,601,662	731,300,000	73,130,000	219,390,000	219,390,000	219,390,000
			3층	4	404,698,338	342,101,662	746,800,000	74,680,000	224,040,000	224,040,000	224,040,000
			4층	4	404,698,338	357,701,662	762,400,000	76,240,000	228,720,000	228,720,000	228,720,000
			5층 이상	56	404,698,338	373,301,662	778,000,000	77,800,000	233,400,000	233,400,000	233,400,000
084.9922B	84B	101동(1호) 104동(1호)	1층	2	404,782,822	306,517,178	711,300,000	71,130,000	213,390,000	213,390,000	213,390,000
			2층	2	404,782,822	322,117,178	726,900,000	72,690,000	218,070,000	218,070,000	218,070,000
			3층	2	404,782,822	337,717,178	742,500,000	74,250,000	222,750,000	222,750,000	222,750,000
			4층	2	404,782,822	353,317,178	758,100,000	75,810,000	227,430,000	227,430,000	227,430,000
			5층 이상	22	404,782,822	368,217,178	773,000,000	77,300,000	231,900,000	231,900,000	231,900,000
084.9779C	84C	101동(3호) 102동(2호) 103동(2호) 104동(3호)	1층	2	404,714,322	304,385,678	709,100,000	70,910,000	212,730,000	212,730,000	212,730,000
			2층	4	404,714,322	320,085,678	724,800,000	72,480,000	217,440,000	217,440,000	217,440,000
			3층	4	404,714,322	335,085,678	739,800,000	73,980,000	221,940,000	221,940,000	221,940,000
			4층	4	404,714,322	350,785,678	755,500,000	75,550,000	226,650,000	226,650,000	226,650,000
			5층 이상	56	404,714,322	365,685,678	770,400,000	77,040,000	231,120,000	231,120,000	231,120,000

Ⅱ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 배정, 소득·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02.28.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연속해서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성남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 및 기타지역(성남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020.9.29.)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 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2.29.(목))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10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3.02.28 이전부터 계속하여 성남시 거주 ('23.02.28 전입한 경우 포함)
	②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후 잔여물량 발생 시 수도권(성남시 1년 미만 포함) 거주자에게 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 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2.29.(목))	① 경기도	50%	•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23.02.28 이전부터 계속하여 성남시 거주('23.02.28 전입 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 입주자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경기도 거주자 중 우선공급 낙첨된 자를 포함)

2.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합니다.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여 자산보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적용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 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 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 · 군 · 구청장)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 ·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37,080천원 이하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3. 소득 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소득 기준 적용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공급유형		구 분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생애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혼부부	우선공급(7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우선공급(70%)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잔여공급(3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잔여공급(30%)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가점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603,607원	6,598,774원	7,020,057원	7,650,626원	8,281,194원	8,911,763원

• 가구원 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기준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단, 임신 중인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 ※ 단, 임신 중인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 단, 임신 중인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 · 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위 가구원 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Ⅲ 기타사항

1.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 · 통신감리	소방감리
상 호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	㈜병오씨엠엔지니어링	㈜갑인엔지니어링
금 액	3,792,528,247	853,597,784	94,766,969

2.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시행위탁자(사업자등록번호)	시행수탁자(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성남시청 (129-83-00153)	성남도시개발공사 (144-82-00548)	금호건설 주식회사 (104-81-31309)

3.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현장접수처(서류접수/공급계약)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현장접수처(서류접수/계약체결 장소)

■ 위치안내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 2층 110호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분양사무실)

■ 운영시간 : 10:00~17:00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홈페이지	분양문의
■ 주 소 : [PC] www.bdkhapt.co.kr	1551-1356 (10:00 ~ 17:0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